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4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0. 2. 20. 접수 제7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소외 E은 2014년경 원고의 감사 업무, 2015년경 원고의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15. 2. 1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원고 종중 계좌의 돈 합계 약 1,031,946,459원을 인출하여 지인인 C에게 대여하거나 자신의 투자비용,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2014년경 C에 대하여 4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9890, 2014가합533970(병합) 사건으로 대여금 4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14. 9. 3. 피고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C은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0.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20.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채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연대보증 채무 각서

차용금 : 1,252,000,000원

본인(C)은 E이 원고의 종재를 임의로 횡령한 것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E이 종재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연대보증의 채무를 지며, 2020. 9. 2.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연대보증인 : C

채권자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E이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여 C에게 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20. 1. 7.경 원고에게 E이 횡령한 원고의 재산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2019년경부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2022. 11월을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있는데, C의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48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비롯하여 소외 F에게 10억 원의 채무 등 합계 약 60억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20. 3. 2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채무초과 상태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이 원고의 재산을 임의로 C에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위 횡령금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C은 이 사건 연대보증 이전에는 E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었다.

②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20. 1. 7. 및 2020. 3. 5. 원고의 대표자와 ‘E이 횡령한 원고 재산의 변제’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기재내용을 살펴봐도 위 대화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C이 E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20. 3. 19.을 기준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걸, 판사 도우람, 판사 이종훈

별지

목록

1. 음성군 대 1019㎡

2. 음성군 대 279㎡

3. 음성군 대 145㎡

4. 음성군 대 6㎡

5. 음성군 의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및 미용실) 346.64㎡

2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및 사무실) 346.64㎡

3층 관람집회시설(예식장) 346.64㎡

4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67.90㎡

지층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297.84㎡

6. 음성군 의 1필지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4.96㎡